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48
----------	------

2021년 6월 2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5월 27일, 박순규 의원(찬성자 24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1년 6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순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(변상금 사전통지서)는 해당되지 않음.

민·관이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이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짐은 물론 민간시설 내의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

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별지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대상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 함. (별지 서식)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른 하천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위한 변상금 사전통지의 [별지] 서식에 대해,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[표] 주요 개정사항

현 행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지 서식]		[별지 서식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colspan="4">변상금 사전 통지서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대상자</td> <td>① 성명</td> <td>② 주민등록 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③ 주소</td> <td>④ 전화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이하 생략</td> </tr> </table>		변상금 사전 통지서				대상자	① 성명	② 주민등록 번호		③ 주소	④ 전화번호		이하 생략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colspan="4">변상금 사전 통지서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대상자</td> <td>① ----</td> <td>② 생년월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③ ----</td> <td>④ ----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이하 생략</td> </tr> </table>		변상금 사전 통지서				대상자	① ----	② 생년월일		③ ----	④ -----		이하 생략			
변상금 사전 통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자	① 성명	② 주민등록 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주소	④ 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하 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변상금 사전 통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자	① ----	② 생년월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----	④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하 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- 현행 조례 [별지] 서식(변상금 사전 통지서)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,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(이하 “법”) 제24조의21)에 따르면 “법률

1)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

· 대통령령 · 국회규칙 · 대법원규칙 · 헌법재판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”, “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, “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”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.

- 따라서 본 조례의 [별지](변상금 사전 통지서)는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바,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첨부 서식의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

② ~ ④ (생략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4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박순규 의원(1명)

찬 성 자 :권수정, 김경영, 김제리,
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
박기재, 박상구, 송도호,
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
신정호, 양민규, 이성배,
이영실, 이태성, 임종국,
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
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(변상금 사전통지서)는 해당되지 않음.
-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별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타 시·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음.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별지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대상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 함. (별지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대상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[별지 서식]		[별지 서식]	
<u>변상금 사전 통지서</u>		<u>변상금 사전 통지서</u>	
대상자	① 성명		② 주민등록 번호
	③ 주소		④ 전화번호
이하 생략		이하 생략	